



## 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1월

### CONTENTS

####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세무동향

- 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예규판례

##### ○ 법원

- 수탁업체에게 새로운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중도 해지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감사원

-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세심판원

-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 시기를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획재정부

- 일반지주회사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 ○ 국세청

-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의 2)

<개정안> 7개 분야 66개 기술 ⇒ 7개 분야 71개 기술

- (신규) 5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1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1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소부장 기술
수소(1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확대) 5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4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 추가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 추가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 ⇒ HDR(high dynamic range) 추가
바이오(1개)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 ○ R&D 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

<개정안> 14개 분야 270개 기술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신규) 3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3개)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 (확대) 3 개

분야	세부기술
첨단소부장(2 개)	첨단 장비 설계·제조기술 ⇒ 국제기준 반영
탄소중립(1 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별표 6·조특칙 §7)

<개정안>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사무 등 범용소프트웨어 제외)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의 인건비를 안분 적용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⑩·§21⑫)

<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신설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간 유예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5년간 유예(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3년간 유예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기준 합리화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⑧·§126②)

<개정안>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 3년간 유예 ⇒ 5년간 유예(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개정이유>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 36)

<개정안>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

<개정안>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추가

<개정이유> 백년가게 지속경영 지원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개정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되, 개인비사업용토지는 제외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 개선,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특령 §11의 4④, ⑥)

〈개정안〉

-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에서 간접법 삭제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지분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 충족

〈개정이유〉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 합리화, 기업 인수 활성화

■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령 §93 의 9①)

〈개정안〉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개인당 매입한도 2 억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14%) 적용) 대상 확대(10 년물 이상 ⇒ 5 년물 이상)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86 의 3①(2))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의 과세형평 제고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득령 §17 의 2 신설)

〈개정안〉

-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지급횟수 기준) 출산지원금을 3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
- (이직 관련)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별로 최대 2 회 지급횟수 적용(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조특령 §100 의 9⑦)

〈개정안〉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 연장(5 년 ⇒ 10 년)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 의 2)

〈개정안〉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공제대상) 시설 이용료(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승용차 개별소비세 단력세율 적용(개소령 §2 의 2①·②)

〈개정안〉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5% ⇒ 3.5%, 100 만원 한도, 적용기한 '25.6.30.)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 ■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인령 §155의 2④ 신설, 소득령 §208의 3③신설)  
〈개정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 신설  
〈개정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령 §120의 22⑤)  
〈개정안〉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개정이유〉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4)  
〈개정안〉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 △50%〈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법인령 §18)  
〈개정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 국채 비과세 경정청구절차 신설(소득령 §179의 4, 법인령 §132의 4)  
〈개정안〉 국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투자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 (제출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 등
  - (청구절차)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 및 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 조세체계 합리화 등

###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소득령 §17의 5 신설)  
〈개정안〉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
-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소득령 §38③·④)  
〈개정안〉
  -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 ①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②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③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④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사 임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들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하여 주는 경우
  - (시가의 판단기준) 법인령 §89(시가의 범위)에 따름(단,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개정이유〉 근로소득인 종업원 할인금액의 범위 구체화
-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1, 소득령 §51)

〈개정안〉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개정안〉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을 손비에 포함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령 §3②)

〈개정안〉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개정이유〉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중소기업·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조특령 §6의4·§9④)

〈개정안〉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법인령 §80의2④·§82의2⑦, 조특령 §35의2⑦)

〈개정안〉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분비율 산정  
〈개정이유〉 자기주식 관련 적격 구조조정 요건 합리화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상증령 §34의3)

〈개정안〉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대상에 외국법인 추가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외국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합리화
-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3①)

〈개정안〉 ‘신탁계약(수익증권)의 수익한도 금액’ ⇒ ‘신탁계약(수익증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방법 합리화(단, 시가평가에 의한 시가가 더 클 경우 그 금액)  
〈개정이유〉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규정 보완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중부세 합산배제(중부령 §4①)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사유용주택의 적용대상에 추가

〈개정이유〉 중부세 과세 합리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 배제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국조령 §60의 2)

〈개정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에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 추가

〈개정이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 3)

〈개정안〉 4 개 업종 추가(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개정이유〉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조특령 §106의 15 신설)

〈개정안〉

- (송객용역 정의)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 송객 후 7일 이내

- (환급보류) 송객용역 매출액/매입액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후 최대 6개월간 환급 보류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법인령 §56⑩)

〈개정안〉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 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 추가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령§216의 2, 법인령§162의 2)

〈개정안〉 비거주자 대상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 소득에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제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개정이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세원 관리 강화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84⑩·§84의 2⑰)

〈개정안〉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승계자산 처분시에도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부가령 §69⑳)

〈개정안〉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편의 제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국조령 §38)  
〈개정안〉 요구 가능 자료에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추가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세무동향

### 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5.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1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킥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 제출서류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누락 유의

###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1.22.(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 ○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 (세입예산) '25년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9조원으로 '24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6조원 대비 43.3조원 증가(13.1% 증가)
- (세입여건)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 향후 세수관리 방향

- (성실납세 지원)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다각적 징수관리)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 (지원기간 연장)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통상 1년이내)
- (지원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

○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 (중소기업 성장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
- (해외진출기업 지원) 각종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주력

■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으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

- (AI 상담 본격 시행)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126)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 상담 적용
- (지능형 홈택스 구현)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

○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

- (상증세 감경평가 확대)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
- (과세기반 확충)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 추진

■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조사운영 개선)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조사 실효성 제고

○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제재수단 강화)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예규판례

### **[법원] 수탁업체에게 새로운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 두 48359 판결, (일부)파기환송)

#### ■ 쟁점

-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1.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원심이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이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위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적극)

#### ■ 사안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73 조의 2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은 회사로,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이하 합하여 ‘수탁업체’)에 새로운 매매체결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였음. 원고는 2017.3.2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으로 수탁업체에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 128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8. 이를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판결요지

1.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의미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 269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 조 제 1 항 본문은 “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 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하 ‘과학기술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하 ‘서비스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원고가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범용 소프트웨어 도구 등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주식회사 ○○과 공동명의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수탁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통상의 용역계약에 포함되는 수탁업체의 일반적인 의무조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실패에 따르는 손실의 위험성은 여전히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 비용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의 위탁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 위탁비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2. 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68 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 26959 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201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별표 6 제1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자체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적격기관 중 하나로 중전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개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연혁, 다른 조세법령 부칙의 입법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13.1.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 비용 중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하여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이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비용 전액에 대하여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법원]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1 두 55203 판결, (일부)파기환송)

### ■ 쟁점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사안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소외 1 회사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소외 1 회사는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상품·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서버 안정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소외 2 회사 등(수탁업체)에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위 개발비용 중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인건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 128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및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이를 거부하였음

###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 269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이하 '이 사건 별표') 제 1 호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이하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자체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①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의 인건비 등을 적격 연구개발비로 규정하고, ②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나)목에서 전담부서 등을 비롯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위탁적격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적격 연구개발비로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 47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는 이 사건 별표 제 1 호 (가)목에 따른 전담부서 등의 하나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들고 있음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 275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시설과 연구전담요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2 조 제 5 호는 '연구개발활동'의 의미를 '과학기술 분야 등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쟁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즉 구 조특법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전담부서 등 위탁적격기관에 위탁한 때에 한하여 그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을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적격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의 인정기준은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2 조 제 5 호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

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위와 같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및 그 적용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수립된 소외 1 회사의 업무 절차, 시스템 및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과학기술활동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법원]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중도 해지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2 두 49984, 2022 두 49991(병합) 판결, 파기환송)

### ■ 쟁점

-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사안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왔음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이고,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로,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였음

- 1)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되,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음
- 2)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납품받은 다음,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았음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가 위 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음.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7.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음

### 판결요지

원심판단 중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 이전의 합의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

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그러나 원심판단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도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1)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2)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원고 지위와 역할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 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단말기 할부매매에 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임
- 3) 이처럼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이 부분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에도 원고가 단말기 공급자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이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 계약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 **[감사원]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3 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심사-242·332(병합), 2025.1.2. 기각)

### ■ 쟁점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3 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안

청구인은 프랑스에 소재하는 모기업의 종속기업으로 화물운송대행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외 관계사 및 운송주선업체(이하 “파트너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 중 국외 화주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조건의 수입화물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 23 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이라고 보아 2018 년 제 2 기부터 2023 년 제 1 기까지 이 사건 운송용역 중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 운송용역(이하 “쟁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음

조사청은 ‘23.12.7. 부터 ‘24.1.21. 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4.1.19. 및 ‘24.2.21. 처분청에 쟁점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세율(10%)로 과세하도록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국내운송용역과 관련하여 ‘24.1.19.과 같은 해 3.2. 각각 2018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와 2019 년 제 1 기부터 2023 년 제 1 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음

###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23 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항 제 1 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복합운송계약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9.7.10. 선고 2019 다 213009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이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총운임을 지급받은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내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과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수원고등법원 2024.2.14. 선고 2022 누 10081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3 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파트너사가 공동 당사자로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그룹사 이익분배지침에 따라 파트너사와 이익을 분배하는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주체라고 주장하나, 조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특정사업의 손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조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지 않았고, 파트너사로부터 쟁점 국내운송용역 관련 운임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 국내운송용역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 2016.1.21.)은 국내외 전체구간을 위탁받아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례에 관한 것이고, 다른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7-부가-2720, 2017.11.30.)은 운송주선업자가 국

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례인 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 국내운송용역만 위탁 내지 도급받은 것으로 보여 위 유권해석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국내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조세심판원]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 2919, 2024.11.20., 취소)

### ■ 쟁점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의료장비 인도시점에서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사안

청구법인은 해외 본사 등이 제작한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고 있고,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을 장비 구입 후 1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보증수리용역(Standard Warranty)과 그 기간 이후에 제공하는 유상보증수리용역(Extended Warranty 로, 이하 “쟁점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용역제공 기간경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장부(기업회계)상 수익을 계상하면서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장비의 인도시점으로 보아 인도시점에 용역대가 총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였다가(인도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장부상 수익계상액을 손금추인함), 이후 2023.9.12. 그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장부(기업회계)상 수익 인식시기로 변경하여 2018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물품 공급대가와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용역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장비 공급대가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 40 조는 제 1 항 및 제 2 항 등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개별적인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 43 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 20 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 두 44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물품의 인도시점이 아닌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 장 제 16.9 (3)에서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동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있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물품의 대가는 인도기준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각각 별도로 기업회계상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계속하여 적정의견으로 표시되어 왔으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위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청구법인의 수익 인식기준이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하는 물품공급계약서에 보증수리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계약서상 총계약금액이 물품대가와 쟁점용역의 대가로 구분 표시되지 아니하여 두 종류의 수익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쟁점용역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쟁점용역의 대가를 산정한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입찰 관계서류인 “견적서”에 물품의 대가와 쟁점용역의 대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물품대가와 쟁점용역의 대가가 개별적으로 식별되고, 고객들도 견적서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들의 확인서에도 고객들이 유상으로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일반지주회사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2024.12.26.)

### ■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4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55 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세청]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669, 2024.8.6.)

### ■ 질의

분할 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사실관계

- A 법인은 B 법인의 '○○ 사업' 부문을 상법상 물적분할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분할기일: '20.11.2.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승계받아 '○○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 법인은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된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제반 권리·의무를 B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았고, 이 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A 법인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법인에 100% 배정함
- B 법인은 분할이전인 '19.12.9. 수탁법인과 '쟁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12.13. 계약금(이하 '쟁점 선급금')을 수탁법인에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함
- A 법인은 분할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쟁점 용역계약을 분할기일에 승계하고 계약자 명의가 A 법인으로 변경됨(분할 시 쟁점 선급금을 포함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에 대해 신주를 교부)
- 쟁점 용역계약은 '19.12.9.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용역기간과 공급가액이 변경되었음

###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승계한 선급금 중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분할 이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국세청]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694, 2024.10.14.)

### ■ 질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의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음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4 제 8 항 및 제 9 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원천세과-1126, 2024.11.21.)

### ■ 질의

해외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급주체(국내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vs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바,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함(해외 주재원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 안) 근로소득의 지급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득령 §16①1) 적용
- (2 안) 국내 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미적용

### ■ 사실관계

- ① 국내 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해외 주재원은 국내법인 소속]
- ②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국내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으로 전적]
- ③ 국내 법인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법인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주거비용 등)과 급여 일부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해외 자회사)에 모두 소속]
- 국세청 예규 판례의 대부분이 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② 및 ③의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 판례가 명확하지 않음

### 회신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 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국세청]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365, 2024.12.23.)

### ■ 질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에 취소하고 취소보상금은 퇴직 후에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실관계

- 질의인은 쟁점법인에 2020.00. ~ 2023.00. 동안 상무로 근무한 후, 2023.11.30. 퇴사함
- 근무 당시 쟁점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는 미국 000 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투자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로로 미국 000 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질의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사 후 3 개월 내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3.00.00.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약정을 체결하고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기로 함(이후 발효일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됨)
- 질의인은 2023.00.00.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2023.00. 중 퇴직금, 퇴직위로금, 쟁점금원을 수령함

###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소득세법」제 22 조 제 1 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mailto: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mailto: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mailto: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mailto: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mailto: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